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·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(5급 1명, 6급 1명, 7급 1명),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 8명(6급 2명, 7급 2명, 8급 2명, 9급 2명) 및 국립피산호국원의 정원 1명(9급 1명)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「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4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(9급 1명)과 국립대전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(7급 1명)을 행정·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, 국가보훈부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1. 29. ~ 12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보훈부령 제 호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제2항 중 “6명”을 “7명”으로 하고, “5급 2명”을 “5급 3명”으로 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334”를 “33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30”을 “327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43”을 “42”로, 행정주사 “25”를 “24”로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임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“37”을 “36”으로 한다.
별표 5 중 총계 “337”을 “334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33”을 “330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43”을 “42”로, 행정주사 “25”를 “24”로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임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“37”을 “36”으로 한다.

별표 6의2 중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임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“8”을 “9”로 하고, “전기운영주사보 1”을 삭제한다.

별표 14 중 총계 “10”을 “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0”을 “9”로 하며, “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임업서기보·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”을

삭제한다.

별표 18 중 총계 “870”을 “86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870”을 “862”로 하며, 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“144”를 “142”로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“175”를 “173”으로, 행정서기·사회복지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“211”을 “209”로, 행정서기보·사회복지서기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“163”을 “162”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10”을 “9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	제23조(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<u>6명</u> (4급 2명, <u>5급 2명</u> , 6급 1명, 7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<u>7명</u> ----- <u>5급 3명</u> , -- -----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4]

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(제23조제1항 본문 관련)

·	·	·	
·	·	·	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34</u>	<u>331</u>	-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330</u>	<u>327</u>	-3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 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·전산사무관 또는 기록 연구관	<u>43</u>	<u>42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<u>25</u>	<u>24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 임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<u>37</u>	<u>36</u>	-1

[별표 5]

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(제23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337	334	-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333	330	-3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 임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·전산사무관 또는 기록 연구관	43	42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25	24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 임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37	36	-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6의2]

국립대전현충원 공무원 정원표(제24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 임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·전산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	8	9	+1
전기운영주사보	1	<삭 제>	-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14]

국립괴산호국원 공무원 정원표(제24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10</u>	<u>9</u>	-1
일반직 계	<u>10</u>	<u>9</u>	-1
·	·	·	
·	·	·	
<u>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</u> <u>임업서기보·시설서기보</u> <u>또는 전산서기보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
[별표 18]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(제24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870</u>	<u>862</u>	-8
일반직 계	<u>870</u>	<u>862</u>	-8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 주사 또는 전산주사	<u>144</u>	<u>142</u>	-2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	<u>175</u>	<u>173</u>	-2
·	·	·	
행정서기·사회복지서기· 공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	<u>211</u>	<u>209</u>	-2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·사회복지서기 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 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<u>163</u>	<u>162</u>	-1
·	·	·	
·	·	·	

사무운영서기보 ·	<u>10</u> ·	<u>9</u> ·	-1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